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산재보험급여 우선지급 등 〉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18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산재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근거 마련 등(안 제38<br>조의2 신설) ..... | 3 |
| 2. 보험급여 우선지급 등(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신설) ....              | 6 |

##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31일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필요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보험급여 결정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임.

이에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

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산재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근거 마련 등(안 제38조의2 신설)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업무상 질병 관련 인과관계 판단 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8조의2제1항),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역학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u>제38조의2(역학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u><br><u>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u> |

|  |                |
|--|----------------|
|  | 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

##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sup>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내규)은 ①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유해인자, 화학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신청인, 보험가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들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이들을 현장 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2)</sup>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공단이 업무상 질병의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급여 신청인 등의 역학조사 절차에 대한 참여가 허용된다는 것을 법률에 상항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역학조사 신청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역학조사 요청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2)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재해조사) ⑨ 소속기관장은 제8항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및 보험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문서,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조사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리고, 동 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등의 참석 요구가 있으면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제8항제1호 본문에 따른 현장 확인조사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현장 확인조사 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보험급여 우선지급 등(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신설)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2조의2),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구체적으로, **보험급여 우선지급 요건**을 살펴보면, ① 급여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고, ②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우선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우선지급할 수 있음.

**우선지급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지급금을 받으려는 자가 공단에 우선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공단은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단이 그 기간 중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제82조)을 준용함(안 제8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외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안 제82조의2제6항).

###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로서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의 일부(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우선지급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게 우선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우선지급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이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⑤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우선지급금”으로 본다.</p> |

|                           |                                                                                                                                                                                                                                        |
|---------------------------|----------------------------------------------------------------------------------------------------------------------------------------------------------------------------------------------------------------------------------------|
| <p><u>&lt;신 설&gt;</u></p> | <p><u>⑥ 그 밖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82조의3(우선지급금의 환수) ① 공단은 우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다.</u></p> <p><u>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급여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기간,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sup>3)</sup>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

산하기관)의 내규에서는 역학조사의 기한을 180일로 하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sup>4)</sup>

최근 산재사건의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40.9일에서 2023년 55일로 25.6% 증가하였고, 이 중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13.2% 늘어났음.

### <산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 연 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산재 평균 처리기간* | 40.9  | 39.1  | 43.4  | 47.6  | 55.0  |
| 업무상 사고      | 16.1  | 15.5  | 15.3  | 15.9  | 16.5  |
| 업무상 질병      | 186.0 | 172.4 | 175.8 | 182.0 | 214.5 |

\*업무상 재해로 처리된 최초요양, 유족급여, 최초요양 결정성 요양비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기간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사건 중 질병별로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333.7일), 직업성 암(289.5일), 정신질환(205.6일) 순으로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역학조사 결과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규칙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역학조사의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역학조사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간 내에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2019년 ~ 2023년 질병별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단위: 건, 일)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전체질병 | 건수        | 18,266 | 18,634 | 24,871 | 28,796 | 31,666 |
|      | 기간        | 186.0  | 172.4  | 175.8  | 182.0  | 214.5  |
|      | 근골격계      | 건수     | 9,426  | 9,925  | 12,449 | 14,448 |
|      |           | 기간     | 136.5  | 121.4  | 113.0  | 146.0  |
|      | 뇌심혈관      | 건수     | 2,694  | 2,380  | 2,276  | 2,035  |
|      |           | 기간     | 155.6  | 132.4  | 120.6  | 122.2  |
|      | 정신질병      | 건수     | 313    | 561    | 696    | 684    |
|      |           | 기간     | 242.8  | 209.5  | 202.0  | 205.6  |
|      | 직업성암      | 건수     | 367    | 487    | 576    | 1,056  |
|      |           | 기간     | 309.3  | 334.5  | 301.9  | 289.5  |
|      | 소음성<br>난청 | 건수     | 2,962  | 3,035  | 5,630  | 9,152  |
|      |           | 기간     | 305.2  | 287.4  | 303.7  | 333.7  |
|      | 기타질병      | 건수     | 2,504  | 2,246  | 3,244  | 4,291  |
|      |           | 기간     | 239.0  | 239.0  | 205.2  | 217.5  |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건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직업병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2019년 기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역학조사 기간은 513.3일, 직업환경연구원(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역학조사 기간은 206.3일이었으

나 2023년 기준 각각 952.4일과 588.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학조사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2019년~2023년 역학조사 의뢰건수, 회신건수 및 소요일수>

(단위: 건, 일)

| 구분    | 전 체 |     |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 직업환경연구원 |     |       |
|-------|-----|-----|-------|-----------|----|-------|---------|-----|-------|
|       | 의뢰  | 회신  | 소요일수  | 의뢰        | 회신 | 소요일수  | 의뢰      | 회신  | 소요일수  |
| 2019년 | 814 | 607 | 236.1 | 111       | 59 | 513.3 | 703     | 548 | 206.3 |
| 2020년 | 607 | 561 | 295.5 | 54        | 70 | 438.0 | 553     | 491 | 275.2 |
| 2021년 | 679 | 525 | 405.4 | 83        | 68 | 632.9 | 596     | 457 | 371.5 |
| 2022년 | 474 | 456 | 465.7 | 36        | 58 | 664.4 | 438     | 398 | 436.7 |
| 2023년 | 204 | 517 | 634.6 | 30        | 66 | 952.4 | 174     | 451 | 588.1 |

\* 자료: 고용노동부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지체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sup>5)</sup>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재해근로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부가 가능한 상황이나,<sup>6)</sup> 건강보험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의 지원이

- 5) 원칙적으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산재승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산재 승인 후에 과도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지체될 수 있고<sup>7)</sup>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이에 대한 불복<sup>8)</sup>도 청구할 수 없는 등 재해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것임.

개정안은 공단이 산재급여의 일부를 우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재여부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임.

또한, 우선지급 후 최종적으로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이 있어 보험급여 지급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구체적인 환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양한 요인에 의한 직업병의 복잡다기한 특성으로 업무와 질병 사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8) 산재급여 결정은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심사, 재심사(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을 통해 이루어짐.

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빈곤 등 재해자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으로 환수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환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고용노동부는 ①전체 업무상 질병 사건(2023년 기준 31,666건) 중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사건은 약 4.7%(1,505건)으로, 대다수 사건이 보험급여 선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바, 업무관련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는 점, ②개정안에 따라 보험급여를 환수할 경우, 환수해야 하는 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선지급금에 대한 환수가 어려울 경우 기금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40 |